
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

- 대 상 :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소득·재산 기준 만족하는 희귀질환자
- 신청 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- 문 의 :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(☎ 02-860-2039)
- 방 법 : 보건소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('희귀질환 헬프라인' 누리집)
- 내 용 *질환별 지원항목 및 기준 상이

① 본인부담금 지원

- 진료비, 만성신장병 요양비, 보조기기 구입비,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

② 간병비

- 월 30만원, 지체 또는 뇌병변 등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 충족 시 지원

③ 특수식이 구입비

- 특수 조제 분유, 저단백 즉석밥, 옥수수 전분

- 신청서식 (②,③,⑤ 부양의무자도 제출)

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

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환자용)

② 소득·재산 신고서

⑤ 소득·재산정보 제공 동의서

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- 제출서류 (③,⑤ 부양의무자도 제출)

①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

④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(해당자만)

② 환자 통장사본 1부

⑤ 임대차계약서(해당자만)

③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

※ 부양의무자범위 :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아들·딸 등),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(며느리·사위 등)

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-

소득 · 재산기준표[2025]

(단위: 원)

가구 규모			1인	2인	3인	4인
환 자 가 구	소득		3,348,818	5,505,721	7,035,494	8,536,882
	재산		365,834,892	410,170,000	441,614,460	472,475,468
	상향 소득		3,827,221	6,292,253	8,040,565	9,756,437
	상 향 재 산	서울	1,219,449,640	1,367,233,333	1,472,048,201	1,574,918,225
		경기	1,029,449,640	1,177,233,333	1,282,048,201	1,384,918,225
		광역시·세종·창원	999,449,640	1,147,233,333	1,252,048,201	1,354,918,225
		기타	759,449,640	907,233,333	1,012,048,201	1,114,918,225
부 양 의 무 자 가 구	소득		4,784,026	7,865,316	10,050,706	12,195,546
	재 산	서울	609,724,820	683,616,667	736,024,101	787,459,113
		경기	514,724,820	588,616,667	641,024,101	692,459,113
		광역시·세종·창원	499,724,820	573,616,667	626,024,101	677,459,113
		기타	379,724,820	453,616,667	506,024,101	557,459,113
	상향 소득		5,740,831	9,438,379	12,060,847	14,634,655
	상 향 재 산	서울	1,463,339,568	1,640,680,000	1,766,457,842	1,889,901,871
경기		1,235,339,568	1,412,680,000	1,538,457,842	1,661,901,871	
광역시·세종·창원		1,199,339,568	1,376,680,000	1,502,457,842	1,625,901,871	
기타		911,339,568	1,088,680,000	1,214,457,842	1,337,901,871	

- 재산: 일반재산(주택, 토지 등) + 금융재산(적금, 주식, 펀드 등) + 자동차 - 부채
- 조사 면제 대상자
 - 환자 가구 ① 1가구 환자 2명 이상은 소득·재산 상관없이 1인은 지원
 - ② 혈우병 환자 (입원특례자, 항체양성환자, HIV감염자)
 - ③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(간병비, 특수식이 구입비만 지원 가능)
 - 부양의무자: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, 차상위 대상자, 한부모가족
- 상향 조정: 혈우병, 고췌병, 파브리병, 류코다당증 환자